

제331회 시의회 정례회
행정자치위원회

2025. 06.

『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 안 설 명

재 무 국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의안번호 제2825호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본 조례안은
 - 상위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이 2025. 1. 1.자로 개정·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범위에 포함됨에 따라
 -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선정대리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, 이를 「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」로 이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5. 6.

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이 혜 경